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 론

이 상 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법안의 주요 내용]

매출 1백억 이내 또는 취급고(중개거래 금액) 1천억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필수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제한, 중지, 종료시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표준계약서, 상생협력, 분쟁협의회 근거조항 도입

1.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특별법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는 있는가?

특정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 달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 특별한 규제를 하려한다면 그에 맞는 납득할 만한 특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논거와 이유를 가지고 규제되고 있는 사업을 보자. KT나 SKT 같은 휴대전화사업이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화(주파수)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방송, 전기, 가스도 마찬가지다. 독과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국가의 세금이나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코로나19, 언택트 환경에서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이고, 나라 전체에서 줄어드는 수익과 일자리를 보충해 주고 있는 분야이다. 당장 규제해야 할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도 않았다. 주파수 같은 국가자원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온라인플랫폼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재산을 제한할 특권도 부여받지 않았다. 인허가사업으로 독과점적 권리를 부여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나 장터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에서부터 거래업체 착취 또는 소비자 착취가 고착화되어 일어나고 있고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대규모의 피해를 안긴다면 그 규제가 정당하다는 논거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그와 같은 징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다.

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기존 법령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인가?

기존 법률들을 보자.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안정성 확보의무(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제34조의2), 금지행위(제50조제1항 5의 2.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규제 등이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등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 거래단계별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절차들과 규정들이 있다.

셋째, 약관규제법이 있다.

넷째, 공정거래법이 있다(불공정행위 유형 및 제재 관련 조항 등).

다섯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있다.

이 법률들을 먼저 적용해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있을까.

3. 헌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온라인플랫폼사업은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질서, 제15조 영업의 자유(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된다.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도 안된다(헌법 제37조 참조).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야별로 계속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존 법령의 적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6개의 조문이 들어있는 제정법을 만드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소지는 없을까.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률에 일부 절실한 조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인도의 환경, 농업, 여성 운동가 Vandna Shiva는 경제시스템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의 일터를 빼앗는다면 범죄경제(criminal economy)라고 했는데, 이 말에 찬성한다. 온라인플랫폼은 그 플랫폼 안에서 많은 기업,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그 안에서 불공정한 요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